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3-3424 (2023. 7. 4.)
(유효기간 : 2023. 7. 10. ~ 2025. 6. 30.)

「NH청년도약계좌」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NH청년도약계좌**

■ 상품특징 : 청년고객 대상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계약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23. 6. 30.)**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❶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❷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단,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❸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가입대상 (계속)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다. 가구원[주3]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3)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❹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4]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가입제한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중복가입 불가)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상품유형	자유로우대적금
거래방법	▪ 신규 및 해지 :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 이용 가능)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가입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의 납입 가능 금액 (예. '23. 7. 10일 가입 시 : 1년차 기준 '23. 7. 10.~'24. 7. 9.)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본이자율 (연%, 세전)	▪ **기본이자율 : 연 4.5%** ※ 신규가입일 당시 농협은행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하며, 가입일로부터 3년경과 시점부터는 기본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성기준일 현재 기본이자율이며 실제적용이자율은 가입일의 고시금리에 따름

<table>
<tr>
<td>우대이자율
(연%p, 세전)</td>
<td>
※ 최고 : 1.5%p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 시 적용)
①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급여입금실적[주1] 우대 : 최고 0.5%p
<table>
<tr><th colspan="2">세부조건</th><th>우대이자율(세전, 연 %p)</th></tr>
<tr><td rowspan="3">급여입금실적</td><td>12개월 이상</td><td>0.1</td></tr>
<tr><td>36개월 이상</td><td>0.3</td></tr>
<tr><td>50개월 이상</td><td>0.5</td></tr>
</table>
주1) 급여입금실적 인정기준은 농협은행 하나로가족고객제도에서 정하는 급여이체 기준을 준용하며, 월별 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급여입금 인정기준」
※ 급여실적은 입금월 기준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예) 9월 30일(일) 급여일인 경우 휴일로 10월 1일에 급여가 입금된 경우
- 9월 급여실적 인정(X) / 10월 급여실적 인정(○)
1. 급여코드로 입금된 경우
2. 통장 내용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급료, 임금, 수당, 연금, 보수, 월보수, salary , pay 등으로 기록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급여이체일자를 등록 후 해당일(±1영업일을 포함)내 입금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및 자동이체에 의한 입금방식은 제외
② 가입 월부터 만기 전전월말까지 농협은행 NH채움(개인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주2] 월 평균 20만원 이상 우대 : 0.2%p
주2) 농협은행 NH채움(개인 신용/체크)카드 승인 기준(현금서비스 제외)
③ 적금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우대 : 0.1%p
* 직전 1년간 기준 : (신규일 전일 - 1년) ~ 신규일 전일까지
④ 적금가입 시점에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서(⑦번 동의서) 전체 동의 고객 우대 : 0.2%p
* 신규 시점에 ⑦번 동의서 전체동의 시(개설완료 후 동의 시 적용불가)
⑤ 소득+ 우대 : 최고 0.5%p
▸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5회 : 우대금리(0.5%p), 4회 : 우대금리×80%, 3회 : 우대금리×60%,
2회 : 우대금리×40%, 1회 : 우대금리×20%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td>
</tr>
<tr>
<td>중도해지이자율
(연%, 세전)</td>
<td>
■ 자유로우대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table>
<tr><th>경과기간</th><th>적용이자율/적용률</th></tr>
<tr><td>3개월 미만</td><td>0.1</td></tr>
<tr><td>6개월 미만</td><td>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tr>
<tr><td>9개월 미만</td><td>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tr>
<tr><td>11개월 미만</td><td>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tr>
<tr><td>11개월 이상</td><td>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td></tr>
</table>
■ 중도해지이자율 : 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 넷째자리에서 절사)
- 중도해지 최저이자율은 0.1%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자유로우대적금 기본이자율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td>
</tr>
</table>

<table>
<tr><td>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td><td>

▪ 계산방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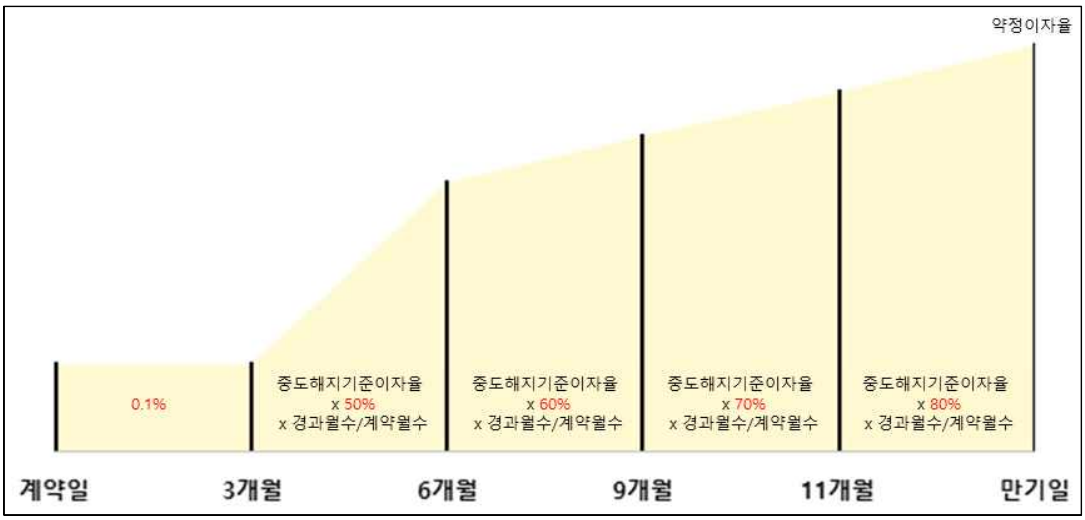

※ 위 그림은 중도해지기준이자율, 경과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자 산출방법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가 아닙니다.

</td></tr>
<tr><td>만기후이자율
(연%, 세전)</td><td>

▪ 자유로우대적금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	적용이율	경과기간	적용이율
만기 후 1년 이내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의 1/2	만기 후 1년 초과	보통예금 이자율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농협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단, 만기일 이후 금리가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는 변동된 만기 후 이자율 적용)

</td></tr>
<tr><td>만기이자
산출근거</td><td>

입금 건별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입급건별 이자계산 산식(예시)] 입금금액×약정이자율×일수(회차일~만기일 전일)/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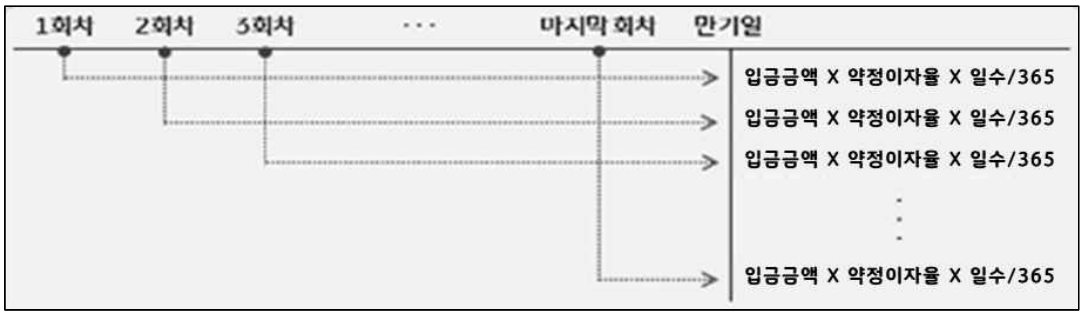

※ 위 그림은 만기해지이자 산출방법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만기해지이자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휴면예금 및
출연</td><td>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td></tr>
</table>

<table>
<tr><td>특별중도해지</td><td>아래사유 발생 시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td></tr>
<tr><td>정부기여금</td><td>■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table>
<tr><th colspan="2">개인소득</th><th rowspan="2">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th><th rowspan="2">정부기여금 지급비율</th></tr>
<tr><th>총급여 기준</th><th>종합소득 기준</th></tr>
<tr><td>2,400만원 이하</td><td>1,600만원 이하</td><td>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td><td>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td></tr>
<tr><td>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td><td>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td><td>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td><td>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td></tr>
<tr><td>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td><td>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td><td>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td><td>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td></tr>
<tr><td>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td><td>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td><td>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td><td>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td></tr>
<tr><td>6,000만원 초과</td><td>4,800만원 초과</td><td>미지급</td><td>미지급</td></tr>
</table>
※ 정부기여금 예시
① 개인소득 2,000만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4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납입원금 2,400만원 × 6% = 144만원
② 개인소득 6,500만원 가입자가 '23.8.1. 신규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계좌의 정부기여금 계산 ⇒ 미지급
❶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❷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❹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❺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품 특약에 동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축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td></tr>
</table>

정부기여금 산정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됩니다. * (예시) '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년차('23.7.10~'24.7.31), 2년차('24.8.1~'25.7.31), 3년차('25.8.1~'26.7.31), 4년차('26.8.1~'27.7.31), 5년차('27.8.1~'28.7.9) ■ 개인소득 심사는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합니다.
재가입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재가입) 가능**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을 적용하여 산출(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주)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만기해지 시 비과세 적용**
담보제공	가능
부분인출	불가
재예치	불가
양도, 명의변경	불가
만기앞당김지급	불가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에 관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유의 사항

- 이 적금은 농협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본인 이외에 대리인 가입은 불가하며, 가입신청은 비대면 채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에 한하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 경우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 마케팅지원부)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